

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95-4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문화공보실)

1. 제안이유

- 구민의 정서 함양과 향토 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남성과 주부로 이원화된 합창단을 통합 설치·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

3. 주요골자

- 합창단 구성은 100인이내(안 제2조제1항)
- 합창단의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서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·여(안 제4조제2항)
 - 발표회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 발표회는 년1회 개최(안 제8조)

4. 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(안)

제1조(목적) 국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합창단 (이하 "합창단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, 부단장 2인, 간사 및 지휘자를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단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된다.

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처리 하고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.

④ 간사는 단장의 지시에 의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
제4조(자격과 위촉) ① 지휘자·반주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②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며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·여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다.

제6조(해촉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
2.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
3.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

제7조(발표회) 발표회는 정기 및 임시로 구분하며 정기 발표회는 년 1회, 임시 발표 회는 필요시 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)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한다.

제9조(실비보상) 지휘자·반주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단원에게는 운영에 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